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. 12 선고 2020가단23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0. 12. 8

판결 선고 2021. 1. 12

## 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강릉시 E 전 2,939㎡ 중 2/13지분에 관하여 2020. 3. 10. 체결된상속재산분할협 의 를 취 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5. 6. 접수제1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주

식회사 F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26176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제기하여 2006. 4. 12. D는 주식회사 F에 25, 643, 498원 및 그중 6, 720, 631원에 대한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이는 2006. 5. 11. 확정된 사실,그 후 원고는 2009. 4. 16.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D에 대한 위 확정판결 상의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 내지 '이 사건 채무'라 한다)을 양수한 사실, 한편 강릉시 E 전2,939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, 2020. 3. 10. G가 사망하면서 아내인 피고와 자녀인 D, H, I, C, J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가 이뤄졌고, 그에 따라 2020. 5. 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의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당시 D는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채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,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이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지분(이하,이 사건 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는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는바,이는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## 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,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위판결 확정일인 2006. 5. 11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, 다른 한편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,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09. 9. 8. D의예금채권 등을, 2010. 4. 15. D의 보험금채권 등을,2011. 3. 11. D의 예금채권 등을,2017. 4. 25. D의 예금채권 등을,2020. 6. 15. D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·추심한 사실이인정되는바, 그로써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각 압류 무렵마다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,피고의 위 시효소멸 주장은이유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

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완수